##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625호 2021. 7. 01.(목)

#### 【훈 령】

○ 고창군 훈령 제494호 고창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sub>1</sub>

####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1-90호 부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sub>4</sub>
- 고창군 고시 제2021-91호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고시6

####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1-1094호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재모집 공고
- 고창군 공고 제2021-1135호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보조요원 모집 공고 14
- 고창군 공고 제2021-1185호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20

회				
람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고창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고창군수

2021년 06월 28일

고창군 훈령 제494호

### 고창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

고창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관련 별표 4의 제13호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 근무성적 실적가점기준

실 적 가 점 부 여 요 건	가 점
1. 친절공무원 가. 친절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자체)	0.2점
2. 새로운 업무발굴·업무관련 창안 등 가. 담당업무관련 창안채택 (도·중앙부처 및 자체 창안상 수상)	1.0점 한도
3. 예산절감에 기여 (제도 및 기술개선에 의한 경우로써 실적평가위원회 및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 에서 인정하여야 함)	
가. 1억원이상 나.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다.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5점 1.0점 0.5점
4.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중앙단위평가 등(도지사 포함)을 통해 기관표창을 수상한 부서 (팀장 담당자 각1명) 가. 최우수	0.3점
나. 우 수 5. 중앙부처(전라북도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포함)등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공모사업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팀장 및 담당자 각 1명)	0.2점
가. 공모사업 국도비확보액 기준 100억원 이상 나. 공모사업 국도비확보액 기준 50억원 이상~100억원미만 다. 공모사업 국도비확보액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미만 라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액 기준 1억원 이상~10억원미만	1.5점 1.0점 0.5점 0.3점
6. 격무팀에 대한 실적가점 가. 대 상 팀: 교통행정팀, 가축방역팀, 재난관리팀, 하천관리팀, 지역개발팀나. 적용대상: 격무팀 6급 이하 공무원다. 가점기준: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자 0.5점, 초과 6월 0.3점 ※ 격무팀 계속 근무 시 최고 2.0점까지 부여 가능하며, 다른 격무팀으로 전보된 경우 격무팀별로 최고 2.0점까지 적용 (잔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0점 한도
7.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가.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제안하여 중앙부처에 수용된 경우 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중앙부처에서 선정된 경우 다. 규제개혁 성과를 관계 기관 등에서 인정받은 경우	0.3점 이내
8. 직위공모에 의해 선발된 공무원(과장 및 팀장) 가. 직위공모에 의해 선발된 공무원 (임용권자가 지정한 공무원도 포함) - 1년 이상 근무자 0.5점, 1년 초과 매 6개월마다 0.3점 ※ 최고 2.0점까지 부여, 다른 직위공모부서로 전보된 경우 부서별로 최고 2.0점까지 적용 (잔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0점 한도
9. 기업유치 유공자(해당부서 담당자, 팀장) 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최근 1년간 기업유치 실적이 투자금액 기준(원화) 200억원 이상 나. 최근 1년간 기업유치 실적이 기준(원화)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다. 최근 1년간 기업유치 실적이 기준(원화)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된 실적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2만 인정	1.0점 0.7점 0.5점

실 적 가 점 부 여 요 건	가 점
10. 군정발전 유공자 가. 다자녀(3자녀 이상) 출산자에 대한 가점 - 셋째 자녀 출산 1.5 - 넷째 자녀 이상 출산 2.0 ※ 출생일이 속한 당해연도, 당해 직급 및 최초 평정 1회에 한하여 적용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일 기준, 부부공무원인 경우 각각 부여)	2.0 이내
11.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투자유치 참여신청서 및 투지유치계획서를 제출한 공무원 중 -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투자금액: 토지매입비(산업단지분양대금 지원금 제외)+시설투자비	3.0점 2.0점 1.5점 1.0점 0.5점
12. 인구유입 유공 공무원 가. 연 100명 이상 나. 연 70명 이상 99명 미만 다. 연 40명 이상 69명 미만 라. 연 10명 이상 39명 미만 ** 인구유입실적 접수대장 작성·관리(울력행정과) ** 전입 후 실거주기간 3개월이상 ** 전입실적은 누계로 하되 당해연도 12.31. 기준 반영	1.0점 0.8점 0.6점 0.4점
1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자체)	0.5점

고창군 고시 제2021 - 90호

### 부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이에 관계도서를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063-560-27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21년 06월 28일

### 고 창 군 수

- 1. 사 업 명 : 부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2. 목 적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
- 3. 사 업 비 : 7,132백만원(국비 4,900 도비 1,050 군비 1,050 이자 132)
- 4. 위치 및 주요 사업내용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
  -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중심가로정비, 주민쉼터조성, 주차공간조성, 도시계획도로
    - 지역경관개선 : 알미장터만남의광장, 간판정비사업, 상징조형물, 지중화사업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 6. 사업시행기간 : 2014. 1. ~ 2021. 6. 30.

#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 행	계획		비고
一 世	기관계측	계	기숭인	금희승인	향후계획	년 도
합 계	7,000,000	7,132,671	7,000,000	[132,671]	-	
국 비	4,900,000	4,900,000	4,900,000	-	-	
지방비	2.100,000	2,100,000	2,100,000	-	-	
이자발생분	-	[132,671]		[132,671]		

(지출) (단위: 천원)

(*12 <i>)</i>		(1						
구 분	기본계획		시 행	시 행 계 획				
) T	기단계역	계	기숭인	금회숭인	향후계획	비고		
합 계	7,000,000	7,132,671	7,132,671	-	-			
ㅇ 공사비	3,718,049	3,480,052	3,512,662	△32,610	-			
-기초생활기반	3,718,049	2,631,034	2,631,038	$\triangle 4$	-			
-지역경관개선	2,101,769	849,018	881,624	△32,606	-			
ㅇ 자재대	-	1,050,601	1,045,332	5,269	-			
ㅇ 용지매수비	-	1,601,700	1,597,388	4,312	-			
- 용지매수	-	702,285	697,973	4,312	-			
- 보 상	-	899,415	899,415	_	-			
ㅇ 관리비 등	839,782	788,186	765,157	23,029	-			
- 측량설계비	331,582	248,170	248,170	-	-			
- 공사감리비	358,000	312,156	312,156	-	-			
- 사업관리비	70,000	77,185	77,185	_	-			
- 경관형성계획	55,879	55,879	55,879	_				
- 일반농산어촌지원비	30,000	-	-	_				
- 잡 지 출	50,200	94,79667	71,767	23,029	-			
ㅇ기 타	340,400	212,132	212,132	-	-			
- 지역역량강화	318,800	212,132	212,132	-	-			
- 마을경영지원	21,600	-	-	-	-			

고창군 고시 제2021-91호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고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 6. 28.

# 고 창 군 수

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ㅇ 세입.세출 결산총괄

(단위: 원)

	회계별		人	1	입			세	출		차인잔액
	회계별	예	산	액	결 산	액(A)	예 산	현 액	결 산	액(B)	(A - B)
	계	753,	812,95	58,000	905,667,	399,383	888,268	,584,860	729,85	0,185,062	175,817,214,321
ō	l 반회계	727,	515,25	58,000	876,952,	506,676	861,599	,887,140	703,71	6,050,428	173,236,456,248
Ē	투별회계	26,	297,70	00,000	28,714,	892,707	26,668	,697,720	26,13	4,134,634	2,580,758,073
	공기업특별 (상수도)	24,	352,63	35,000	24,914,	905,310	24,679	,632,720	24,31	7,285,450	597,619,860
	기타특별	1,	945,06	65,000	3,799,	987,397	1,989	,065,000	1,81	6,849,184	1,983,138,213

ㅇ 이월액 내역

(단위 : 원)

	કો -ગો મો	5] 6] <b>7</b> ] 6]]		이 월 시	- 업 비		보조금	순세계
	회계별	차인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실 제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175,817,214,321	128,273,957,070	78,237,072,030	43,275,756,970	6,761,128,070	12,760,539,852	34,782,717,399
C	일반회계	173,236,456,248	128,266,357,070	78,237,072,030	43,268,156,970	6,761,128,070	12,716,677,332	32,253,421,846
E	특별회계	2,580,758,073	7,600,000	0	7,600,000	0	43,862,520	2,529,295,553
	공기업특별 (상수도)	597,619,860	7,600,000	0	7.600.000	0	456,900	589,562,960
	기타특별	1,983,138,213	0	0	0	0	43,405,620	1,939,732,593

나. 2020년말 기금현재액(11종) ....... 13,018,376,172원

다. 2020년말 채권현재액 ...... 3,757,895,184원

라. 2020년말 채무현재액 ......... 6,400,000,000원

마. 2020년말 공유재산현재액 ...... 2,373,853,057,711원

바. 2020년말 물품현재액 ...... 9,729,080,520원

사. 2020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재무제표)

#### ㅇ 재정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합 계
자 산 (A)	2,903,266,699,590	7,169,212,016	14,005,966,663	80,703,418,362	(36,374,518,000)	2,968,770,778,631
부 채 (B)	34,910,630,086	71,133,970	0	86,190,892	0	35,067,954,948
순자산 (A-B)	2,868,356,069,504	7,098,078,046	14,005,966,663	80,617,227,470	(36,374,518,000)	2,933,702,823,683

#### ㅇ 재정운영표

(단위: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합 계
수 익 (A)	675,292,550,921	1,723,515,621	1,950,419,089	9,511,872,950	(46,523,532,690)	641,954,825,891
비 용 (B)	568,442,120,166	1,857,152,752	42,292,600,199	11,093,516,691	(46,523,532,690)	577,161,857,118
운영차액 (B-A)	(106,850,430,755)	133,637,131	40,342,181,110	1,581,643,741	0	(64,792,968,773)

고창군 공고 제2021-1094호

##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재모집 공고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안전관리요원의 상시배치로 관광객의 안전한 물놀이와 인명사고 예방, 코로나 19 대응, 질서 유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해수욕장 2개소(구시포, 동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요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일

고 창 군 수

### I 모집개요

- O 모집인원 : 3명(안전관리요원)
- O 모집기간 : 2021. 6. 14. ~ 6. 17. (4일간)
- 근무기간 : 2021. 7. 9. ~ 8. 15.(38일) 10:00 ~ 19:00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만55세 이하인 자 (단.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자는 만65세 이하로 함)
- O 응시자격 : 기본요건 충족하며 필수 항목 하나이상 해당자
  - 기본요건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고창군 과거 주소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인 자(근무지 출・퇴근에 지 장이 없는 자)
    -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신체검사 합격자)로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
    - ▶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
  - 필수(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 ▶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자
    -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자격증 보유자

### Ⅱ 신청서 접수

- O 접수기간: 2021. 6. 14. ~ 6. 17.(09:00 ~ 18:00)까지 접수
- 접 수 처 : 해양수산과에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bersugi@korea.kr.)
  - 1)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내에서만 접수 가능, e-mail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2) e-mail 접수시는 제출서류 일체를 컬러 스캔하여 PDF 파일이나 기타 그림 파일 등으로 전송해야 함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자필서명후 스캔하여 전송, 우리 군에서 출력시 1페이지씩 구분 출력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문서 제목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신청"이라고 표시)
- 문의사항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063-560-2646)
- O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과거 이력포함) 각 1부.
- 인명구조 자격증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 신체검사서(병원 및 보건소 발급) 1부. (※ 부적합 시 선발 제외)

## Ⅲ 우선순위 선발 기준

- 1. 응급구조 과목 이수자
- 2. 해수욕장 안전관리 유경험자
  - ※ 해당자가 많아 경합 발생시 근무특성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령을 고려하여 선발 (고령자 제외)

### Ⅳ 평가방법

- O 자격요건(서류검토) 심사 후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 고창군 홈페이지 참조(http://www.gochang.go.kr)
  -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Ⅴ 근무조건

구 분	안전	<b>!관리자</b>	안전괸	·리요원				
근무기간	2021. 7. 9. ~	2021. 7. 9. ~ 8. 15.(38일)						
근무시간	10:00 ~ 19:00	※ 2시간이내 연장	근로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근무장소	구시포해수욕 장	동호해수욕장	구시포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근무인원	1명	1명	7명	7명				
근무내용	<u>안전관리 업</u> ○ 안전시설, 구. ○ 안전시설 및 ○ 안전요원 교육	 조장비 등 운영관리 장비 관리책임 당·훈련 및 복무관리	○ 코로나 19 대응관련 방역 및 안전관리 업무 ○ 해수욕장 순찰 및 관광객 안전계도 ○ 인명구조 활동 ○ 응급환자 응급처치 후송 ○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 그 외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수기준	<ul><li>○ 식비(1식)</li><li>○ 주 만근(6일급</li><li>○ 4대보험(건강보</li></ul>	132,000원 8,000원 근무)시 1일 통상임금 보험, 국민연금, 고용도	라의 50% 가산지급( 보험, 산재보험)의무가	000원 연장근로수당)				
근무조건	○ 금·토·일 전원 ○ 주 6일 만근/	○ 근로조건 : 주 6일근무 및 1일 휴무 ○ 금·토·일 전원근무, 평일(월~목)중 1일 휴무 ○ 주 6일 만근시 5일은 기본근로, 1일은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실 근무시간 주52시간(기본 40, 연장 12)내 한정						
기타사항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요원 중 유	우리 군에서 별도 지	정				

### Ⅵ 계약해지

- O 계약해지(필요시)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 근로자의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불성실 근로자 판단기준 참조
  - 업무량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 그 밖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등

####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자 : 사전에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 지급),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Ⅷ 접수 시 유의사항

- 지원서류의 미비 및 오기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O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O 응시원서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O 배점이 높은 지원자로 선발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포기할 경우 합 격자 다음 순위로 선발합니다.
- O 최종 합격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근무지(구시포-동호해수욕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O 최종 합격 후 근무지 배치는 <u>현지 사정에 따라 군에서 일괄 배치하</u> 므로 희망근무지 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일 기준 현재 고창군에서 시행중인 사업장에 근로계약이 체결 되어 있거나 사역중인 경우 본 사업의 합격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안전관리요원 운영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되었을 경우 를 대비해 지원자 중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063-560-2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창군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지원신청서

사진부착 (6개월 이나 반명함판)	인 적 사 항	성	한 글 한 자 주 소 별  번호	( <del>ዮ</del> : -	) 희밍	·근무지	주민등 번 <u>3</u>	루	구시	포 또는 동호
2. 자격증 자 격 증		<u>건</u> 증명		자격	중취	득(예정	])일	_	자격 집	검증기관
3. 응급구 응 <i>7</i> 급 구 조		과목 학교)'	이수 명	내용	可工	가 목			이수	-기간
4. 채용분 직 경 력	· 야 와 장 명	동양		는 유시	가 한 ·		<b>령 력</b> 구부서		딤	<b>가 당 업</b> 무
급여계좌				예	금주			금융	구기관	
근무복 사이	<del>근무복 사이즈</del> 상의( ), 하의( ), 모자( )									
		P		사항은 2021년 작성자	월	ļ Ç	일	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으	Ⅰ 스짓 및	이용	모전
	게ԵΟㅗㅡ		. 40	$\neg$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안전관리요원 채용을 위한 목 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게이저ㅂ이	스지 미	이요모저으	이어이대 내요	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구입 것	이용속식글	러웠으며 대용	에 중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지택전화, 휴대폰 번호 등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 우대사항

□ 수집하는	<u>필수정보</u>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	다.
----------------------------------	----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고창군 공고 제2021-1135호

##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보조요원 모집 공고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안전관리보조요원의 배치로 관광객의 안전한 물놀이와 인명사고 예방, 코로나 19 대응, 질서 유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해수욕장 2개소 (구시포, 동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요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일

고 창 군 수

## I 모집개요

○ 모집인원 : 10명

O 모집기간 : 2021. 6. 21. ~ 6. 23. (3일간)

○ 근무기간 : 2021. 7. 9. ~ 8. 16.(39일) 10:00 ~ 19:00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만55세 이하인 자

#### O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고창군 과거 주소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인 자(근무지 출·퇴근에 지 장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신체검사 합격자)로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
-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Ⅱ 신청서 접수

- O 접수기간: 2021. 6. 21. ~ 6. 23.(09:00 ~ 18:00)까지 접수
- 접 수 처 : 해양수산과에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bersugi@korea.kr.)
  - 1)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내에서만 접수 가능, e-mail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2) e-mail 접수시는 제출서류 일체를 컬러 스캔하여 PDF 파일이나 기타 그림 파일 등으로 전송해야 함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자필서명후 스캔하여 전송, 우리 군에서 출력시 1페이지씩 구분 출력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문서 제목은 "해수욕장 안전관리보조요원 신청"이라고 표시)
- 문의사항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063-560-2646)
- O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과거 이력포함)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 신체검사서(병원 및 보건소 발급) 1부. (※ 부적합 시 선발 제외)

## Ⅲ 우선순위 선발 기준

- O 응급구조 과목 이수자
- 해수욕장 안전관리(코로나 19 방역 포함) 유경험자
- O 해당자가 많아 경합 발생시 근무특성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령을 고려하여 선발 (고령자 제외)
  -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해지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 선정 예정(2명)

### Ⅳ 평가방법

- 자격요건(서류검토) 심사 후 합격자 결정
- O 합격자 발표 : 고창군 홈페이지 참조(http://www.gochang.go.kr)
  -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Ⅴ 근무조건

구 분	안전관리	보조요원						
근무기간	2021. 7. 9. ~ 8. 16.(39일)							
근무시간	10:00 ~ 19:00/1일 8시간							
근무장소	구시포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근무인원	6명	4명						
근무내용	○ 코로나 19 대응관련 방역 및 안전관리 ○ 해수욕장 순찰 및 관광객 안전계도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보조 ○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 그 외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 ○ 코로나19 방역 및 발열체크 업무	조 항						
보수기준	<ul> <li>○ 기본급(일당): 8,720원*1일*8시간</li> <li>─ 부대경비(식비): 8,000원</li> <li>○ 주 만근(6일근무)시 1일 통상임금의</li> <li>○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li> </ul>	의 50% 가산지급(연장근로수당)						
근무조건	<ul> <li>○ 근로조건 : 주 6일근무 및 1일 휴·</li> <li>○ 금·토·일 전원근무, 평일(월~목)중</li> <li>○ 주 6일 만근시 5일은 기본근로, 1</li> <li>※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실 근무시점</li> </ul>	1일 휴무 일은 연장근로						

## Ⅵ 계약해지

- O 계약해지(필요시)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 근로자의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불성실 근로자 판단기준 참조
  - 업무량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 그 밖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등

####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자 : 사전에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 지급),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Ⅲ 접수 시 유의사항

- 지원서류의 미비 및 오기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O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O 응시원서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O 배점이 높은 지원자로 선발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포기할 경우 합격자 다음 순위로 선발합니다.
- O 최종 합격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근무지(구시포동호해수욕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O 최종 합격 후 근무지 배치는 <u>현지 사정에 따라 군에서 일괄 배치하</u> 므로 희망근무지 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일 기준 현재 고창군에서 시행중인 사업장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사역중인 경우 본 사업의 합격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O 안전관리요원 운영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지원자 중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063-560-2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창군 해수욕장 안전관리보조요원 지원신청서

(6	사진부착 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 적 사 항	성	한 자	(우:	-	)	망근무지	주민등 번 본적	루 호	구시	포 또는 동	-101
2. <sup>7</sup> 자 격 증	자격 증 자·	격증	등명			자격	중	취득(예7	성)일		자격 기	검증기관	
3 응급 구조	응급구조 기관				내	<u>Q</u>	加	과목			이숙	-기간	
4. <sup>경</sup> 경 력	채 용 분 야 9 기 관 명		동양			유 시 기 간	한		병력 무부 <i>서</i>	]	Ę	<b>ት 당 업</b> 무	
급이	<b>부계좌</b>					예-	금주			금융	가기관		
근무	근무복 사이즈     상의( ), 하의( ), 모자(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보조요원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안전관리요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bigcirc$	필수항목 :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번호 등
$\bigcirc$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기	격. 우대사항					

□ 수집하는 <u>필수정보</u>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u>선택정보</u>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응시원서 -	등 제출	원 기	ii인정보는 :	제출일로부	터 채용이	] 완료될	때까지	이용됩니	다.
Г	개인정보의	보유	및 0	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	동의한니	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고창군 공고 제2021 - 1185호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및 관내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디지털분야 전문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21년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참여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6. .

고창군수

#### 1. 사업개요

- o 사 업 명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 202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4유형)
- ㅇ 접수기간 : '21. 6. 30. ~
- ㅇ 사업규모 : 5명(청년 만18세 ~ 39세)
- o 사업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 o 지원내용 : 관내소재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디지털분야

전문적인 일자리 분야에 청년을 채용시 인건비 등 최대

10개월 지워

- 1인당 월별 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 급여	자기개발비	자율지원(교통비,보험료)
200만원	20만원	22만원 (교통비 5만원, 보험료 17만원)

- ※ 1인당 년 지원액: 인건비 2,000만원, 자기개발비 200만원, 교통비 50만원, 4대보험료 170만원
  - 자기개발비 및 4대보험료는 고지서 및 영수증에 따라 실제 집행한 금액 제공
- o 추진절차 : 법인,기업 모집·선정→ 청년 모집·선발→ 근무, 정규직 전환

#### 2. 참여법인 선발

- ㅇ 대상법인
  - 고창군 소재 고용보험 가입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으로 상시고용 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200만원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 o 신청방법: 방문.우편. e-mail 접수
- o 제출서류 : [서식1]신청서, [서식2]운영계획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3. 신청 제외대상 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 ①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및 체납 사업장(국·지방세 등)
-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장
- ③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업장
- ④ 청년의 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 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업장
- ⑤ 청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⑥ 기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 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4. 유의사항

- 채용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 o 청년취업자 채용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은 고창군과「청년취업 지 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 o 청년취업자 채용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 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채용코자 하는 경우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법인에 선정되었거나 청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 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주 소
560-2359	nk0115@korea.kr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1. 2.





# 목 차



I. 총 칙 ··································
Ⅱ. 실시사업장 및 참여자 자격
Ⅲ. 모집 및 선발 5
IV. 청년일자리 사업 약정 체결 및 관리 8
V. 청년일자리협약(고창군-지원사업장) 체결 ············ 12
VI. 정규직 전환 ······13
VII. 지원금 지급 ·······14
VⅢ. 지원금 관리 ···································
IX. 사후관리 ······· 17
X. 시행일 ······ 18
[첨부 1] 사업 참여사업장 심사지표 19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20
[서식 목록] 21

## ェ║총칙

#### 1. 목 적

○ 이 지침은「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 청년취업사업장 및 청년취업자가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법적 근거

○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 안정 및 취업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11조전라북도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행·재정적 지원), 고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자리창출 사업) 및 제7조(청년일자리지원)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3. 용어 정의

- "고창형 청년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이라 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등에 디지털분야 전문직종에 취업기회 제공함으로써 일 경험과 교육비지원으로 취업연계성을 제고하며, 비영리법인 인력수급 원활화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층 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지원사업장"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사업장 청년취업자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 등 을 말한다.
- "청년취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장과「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약성서」를 체결하고, 디지털 전문분야 실무경험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수습자와는 구분한다.

#### 4.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 고창군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 지원사업장에 대한 구인 · 구직 정보의 제공
- 미취업 청년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청년취업 희망자 및 청년취업자 채용 희망사업장 등에 대한 상담
- 청년취업 참여 사업장 수요조사,발굴, 청년취업자 모집
- 지원사업장 청년취업 희망자와 지원사업장 신청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 지원사업장 청년취업 희망자와 지원상업장간 청년취업약정 체결 지원 및 청년취업사업 지도.관리
- 청년취업 지원사업장 및 청년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반환
- 지원사업장에 청년취업자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 청년취업 지원사업장 및 청년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 지원사업장

- 고창군의 알선을 받아 청년취업자를 채용 및 관리
- 청년취업자 근로조건 등에 대한 청년취업약정(지원사업장-청년취 업자) 체결
- 청년취업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 노력
- 고창군 일자리종합센터(고창군일자리센터, 고창군로컬JOB센터)
  - 지원사업장의 실태조사 실시
  - 정규직 채용독려 및 지원사업장 청년취업자 모니터링 실시

ПΙ

## 지원사업장 및 참여자 자격

#### 1. 지원사업장 신청자격

- 1-1. (대상사업장)「고용보험법」가입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적기업으로서, 고창군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비용 중 일정 임금 이상 부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적기업으로 한다.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대표자 제외)"는 청년일자리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 1-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및 체납 사업장(국·지방세 등)
  -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장
  - ③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업장
  - ④ 청년의 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 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업장
  - ⑤ 청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⑥ 기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 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1-3. (적격심사) 지원사업장 및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 참여자 자격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장과 청년 취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 청년일자리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상황에 맞게 자체 운영한다.

#### 2. 청년취업 참여자 자격

- 2-1. (대상)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 참가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 또는 채용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인 자
- 2-2.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 ①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병역법」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 ② 이 사업의 청년취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고 청년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청년취업 근무만료 자 단, 청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3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참여할 수 있다.
  - ③ 채용예정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자
  -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Ⅲ│ 모집 및 선발

#### 1. 청년취업자 및 지원사업장의 모집

- 1-1. (사업 개시) 고창군에서는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취업신청자와 지원사업장을 홍보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모집·선발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일괄 모집할 수 있으며 목표미달, 중도해지자 발생 등 추가모집 사유 발생 시에는 수시 모집한다.
- 1-2. (청년취업 신청)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실시를 희망하는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취업 채용신청서(서식 1)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운영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고창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 3)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동의자에 한함, 서식 4)를 작성하여 고창군에 신청한다.
- 1-3. (청년취업자 및 지원사업장 자격 심사 및 안내) 고창군에서는 지원사업장 및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신청자를 확인 심사하여 결격자는 배제한다.
  - 고창군에서는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신청자 및 신청사업장에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창군에서는 사업장 모집 시 신청자격 제외대상 확인과 심사 기준(첨부 1 - 심사기준표) 등 자체 검증절차를 거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 2. 청년취업 알선 및 채용

- 2-1. (상담 및 채용 알선) 고창군에서는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신청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사업장 경우 필요인력의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창군에서는 상담결과에 따라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취업자 및 구인사업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취업 을 알선하여야 한다.
- 2-2. (지원사업장의 직접 선발) 고창군의 알선으로 고창형 청년 뉴딜일 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자체 모집계획에 의거 일간지.인터넷 등에 청년취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이러한 자체 모집은 지원사업장이 고창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청년취업채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체모집 경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승인받아야 하며, 고창군에서는 지원사업장의 채용 시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할 수 있다
- 2-3. (우선 지원) 고창군은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가능한 사업장 및 보수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2-4. (청년취업자 채용의 확정 및 통보)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 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가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5)을 고창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2-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정부, 도, 고창군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과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에 중복 참여한 경우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을 중단하 며 향후 일자리사업 지원 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 Ⅳ 청년일자리사업 약정 체결 및 관리

#### 1. 청년취업약정(지원사업장-청년취업자)의 체결

- 지원사업장과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는 채용결정 후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약정서(서식 6)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하여 청년취업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약정 체결 후 그 사실을 고창군에 통지함으로써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일자리협약을 체결한다.

#### 2. 청년취업자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수습기간의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는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또는 수습기간 내)의 단기계약 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지원 사업장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 3. 청년취업자 급여지급

- 3-1. (급여의 명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의 급여는 청년취업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고창군 지원금을 포함 임금은 월 200만원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급여는 월 200만원이상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한다.
- 3-2. (급여의 선 지급)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약정서에 정한 날에 청년취업자에 대해 임금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4. 청년취업수습 기간

- 4-1. (청년취업수습 기간)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수급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하되약정체결 이후에도 사업장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의해 단축할 수 있다.
- 4-2.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고창군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 5. 기타 근로조건

- 5-1. (근무시간 등)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 근무시간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2. (청년취업약정의 효력 및 보충)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청년취업자의 교육, 배치 및 운영

- 6-1.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업무에 고려하여 야 하고, 고창형 청년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 출근카드(서식 9)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6-2.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지원사업장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고 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고, 청년취업 자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지 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7.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7-1. (인위적 감원 시 제재) 지원 사업장에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직원 채용 후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고용조정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그 감원인원 수 만큼 그때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로부터 청년취업 추가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 7-2. (지급중단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는 감원 직전 채용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원 직전 채용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다.(단, 감원일 이후 및 지원중단 조치 이전 퇴직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가 있는 경우 동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를 지급중단 대상으로 봄)
- 7-3. (상시근로자 수 유지)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 기간에 협약체결 후 평균 상시 근로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 8. 중도해지자 관리

- 8-1. (중도해지의 제한)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 업청년취업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 8-2. (중도 해지자의 재참여 요건)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가 원하여 이직하거나, 취업포기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지원금 미지급, 청년취업자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사업장의 도산, 사업 폐지, 정리 해고 등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참여할 수 있다.

- 8-3.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가 중도에 퇴사하거나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고창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한 사업장 지원금의 지급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의 실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8-4. (결원 보충)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 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대체 충원을 고창군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채용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새로이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업청년취업약정으로 정한 기간을 지원한다.
  - 단, 이 경우 대체충원 신청시점에서 최초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신청 사업장보다 후 순위로 지원한다.

## ∨ 청년일자리협약(고창군-지원사업장) 체결

### 1. 청년일자리협약 체결

- 1-1. (청년일자리협약) 고창군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약정서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운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당해 지원사업장과「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2. (협약내용)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서(서식 8)작성은 참여사업장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이 기 체결되어 있는 경우 추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은 별도 체결하지 않고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3. (협약 시 조건) 고창군은「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다만,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2. 청년일자리협약의 해지

○ 고창군은 지원사업장이 지침 및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창형 청년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군에서는 위반사항 발견시 협약해지를 권 고할 수 있다.

## Ⅵ 정규직 전환

### 1. 정규직 전환 노력

○ 고창군 및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규직 전환기한 및 지원금 지급조건

- 지원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수습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고창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장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계 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서식10)을 고창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자의 정규직 전환시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7)를 준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하며 **최소한 2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의미하다.

## Ⅷ│ 지원금 지급

### 1. 청년취업기간 중 지원금

- 1-1.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창형 청년 뉴 딜일자리지원사업 청년취업자 1인당 10개월 동안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또한, 자기개발비, 교통비 등 기타지원비를 재정여건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 수습기간 중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

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사업장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보조금은 천원단위로 절사하고, 부족금액은 사업장이 부담함)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소정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2. 청년취업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 2-1. (신청)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수 습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근무자의 4대 보험 가입확인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임금 입금 통장·출근부·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1)를 익월 5일까지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2-2. (지급시기 및 방법) 고창군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매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사업장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과 지원사업장의 합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분기별 지원 가능)

- 2-3. (지급제한 등) 지원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신규채용 지원을 금지하며, 고용노동부 등 유사사업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년이 중도 포기하거나, 지원사업장의 휴·폐업, 도 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 Ⅷ│ 지원금 관리

### 1. 지원금 교부

1-1. (지원금 교부방법) 고창군에 대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전라북도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2. 지원금 관리

- 2-1. (적용 법률) 지원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지 방보조금 관리 기준」,「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관 리하여야 한다.
- 2-2. (관계서류의 보존) 고창군은 지원금 지급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3. 부정지출·수급 방지

- 고창군은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주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 지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1조(벌칙)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 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2조(벌칙)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 였거나, 수급한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

로부터 2년간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 신규채용 지원을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 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 까지 사업참여를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신규 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 4. 지원금의 반납·상계

- 4-1. (고창군의 반납의무) 고창군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4-2. (지원사업장의 반납의무) 지원사업장 이 지침 및 고창형 청년 뉴 딜일자리 사업 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당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5. 지원금 정산

- 5-1. (사업비 정산 보고) 고창군은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 비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 5-2. (지원금 확인)

-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고창군에서 지원사업장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 5-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고창군은 정산결과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이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IX|**| 사후 관리**

### 1. 서류관리 및 보존

- 1-1. 고창군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자 인적사항, 지원사업장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2. 고창군은 참여사업장과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자 간의 건전한 고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2년 후의 고용유지율 을 조사 관리하고, 독려한다.

### 2. 지도·점검

2-1. (고창군의 지도점검) 고창군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수습 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상.하반기)

- 2-2. (지원사업장의 협조의무) 고창군에서 지원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4. (지원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고창군은 지원사업장이 지침, 고창군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자 신규채용 지원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X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이 지침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1] 「고창형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심사지표

	기 준	배점	비고
	10인 이상 ~ 20인 미만	30	
법인규모 (30)	5인 이상 ~ 10인 미만	25	
	5인 미만	20	
	220만원이상	30	
월 급여액 (30)	200만원~220만원미만	25	지원금 포함
	200만원	20	
사업계획의	디지털분야 일자리, 참여자 교육계획 구체성	30	
구체성타당성 (30)	디지털분야 일자리(비대면.디지털기술 활용)	20	
사업년도	20%이상	10	
신규채용 계획인원	10%이상 ~ 20%미만	8	
(10)	10%미만	5	
가점 (10)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및 각종 재난 피해 사업장	10	

\* 탈락 : 평가 점수 60점 미만

#### [첨부 2]

##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 실시법인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o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선정 후 기존 직원 부당 감원	o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o 2년간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참여제한
지원금부정수급	<ul><li>기존직원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채용</li><li>실무수습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li></ul>	o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o 2년간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기타	O 지침, 지원협약 위반 O 기타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ul><li>이 1차례 위반: 주의 및 시정지시</li><li>이 2차례 위반: 경고 및 시정지시</li><li>이 3차례 위반: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li></ul>

<sup>※</sup>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불이행시 경고하고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요구, 불이행시 지원중단

<sup>※ 3</sup>차례 위반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시 2년간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유사사업 시행기관에 통보

## 「고창형 청년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서식 목록

[서식 1]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채용신청서(사업자용)1
[서식 2]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운영계획서(사업자용)3
[서식 3]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신청서(참여자용)4
[서식 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5~6
[서식 5]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선발자 명단통보서(사업자용) ··7
[서식 6]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약정서8
[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8]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협약서10
[서식 9] 출근카드14
[서식 10] 정규직명단 통보서15
[서식 11] 고창형 청년취업자 지원금신청서16
[서식 12]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17
[서식 13]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체인력 명단통보서18
[서식 14] 청년취업자(교육,컨설팅,자기개발비)지급신청서 … 19
[서식 15] 설문조사서20
[서식 16] 고창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장 만족도 조사 ········ 22

## [서식 1]

# 고창형 청년 취업 채용신청서(사업자용)

										* 7	접수번호	:	
	사업장명						디	게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장번호					
법	주 소		]-					보험사업 <sup>:</sup> 나리번호	장				
	제모수			를(채용	- 후	명)	叫	보험자수			명(채용	후	명
인	주 요 사업내용	1. 2.					섵	[립시기					
현	업 종												
황	정부 및 지	]자체 브	보조금 저	기원 이	ᅧ부	1. 예		지원 사업	업명 표	7])	2. 아니	오	
	÷110110471		전 화	번 호	(	)	-	19	) 팩	스	_	_	
	채용시업장 및 담당자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 \ \ \		휴대	전 화		-		-					
지원 신청	신규채	용계획	인원				명	예상급	급여(월)				원
선경 내용	고	.용형태		정규	직 :		명	비정	성규직 :		명		
회													
사													
연													
혁													
÷1													
회 사													
전   등													
비 전 등 소 개													
개													

	구 분	분 야	인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모 집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집 사 항		게 탁 2.										
		3.										
	근로조건	· 근무시간 : · 휴일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 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고용보험 미가입 미 체납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③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④ 청년의 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위와 같이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사업장 대표

고창군수 귀하

[서식 2]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운영계획서(사업자용)

사 업 장 명		연 락 처 ( ) -						
연 수 기 간		~ ( 개월)						
근 무 시 간		: ~ :						
연 수 관 리								
관리책임자	직우	성명						
	근무부서	수습자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고창군수	ጠጣ							

#### [서식 3]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참여자용)

접수	·번호								(신청양	일자 : 20		.)
성	명					주	민등록병	번호		-		
주	소					연:	락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	시 선택	기입
OIDIS	일주소					수	신동의(	겨부	동의	( ) 미동	등의(	)
핸드	폰번호					수	신동의(	겨부	동의	( ) 미동	등의(	)
* 일	모아시스	템의 C	h른 일자리	IS 수신 동 I사업에서 신 락처로 참여제	청자 부	족으		자 선	동의	( ) 미동	등의(	)
0.1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	었음		세대원	<b>수</b> (세디	<u></u> 두, 동개	인제외)		명
이 력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③ 취업	② 실업 경험 없음		_ 전 직업			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 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사 항	실 업	기 간	간 20~20						무직, 기			,
	그밖의	l 경력										
전문	가인 경약	구 ス	·격(	), 경르	ᅾ(		), 기(	타(		) *상세	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걸 ①			2				3			
구직	등록여부	빌등	록 ( )	, 미등록 (	)							
과거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u>!</u> 참(	여사업명 (	1)		2				3		
		참	여기간 2	20~2	20	20		~20 .		20	.~20	
공무원	면 가족여!	부					* 가를	<del></del> 족 중에		원이 있는	경우 기	 l 재

- ① 본 신청서는 \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u>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u> 불이익(\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서명)

#### [서식 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	동의사	1(사업자용	-)
	10 11	~   1 1 <u>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u>	0 - 1	$\mathbf{I}$	•

버	0		
$\Box$	<u>ا</u> ت	0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

주 소:

- 1.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청년취업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3. 고창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고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	동의사	러(개이-	욧)
	- I O II	~   <u>1.</u>	0 -1	11/2/11/12/	റേ

성주주	민번호				(전화번	호 :		)
1.	위해 부	,	별정보(주민	. – . –	- , , ,	있어 개인을 함한 개인정		, – , ,
	적격여	부 판단	정부재정지	]원일자리	의 사업 중	딜일잘리 청 두복참여여부 [호, 고용보호	등에 활용	3
	상실이	]력, 정부	-재정지원일	자리 참여	여이력	서 수집 및 <i>7</i>	_ , _	, , , , ,
2.	위해 브	부여된 스	니별정보(주민	]등록번호	등)를	서는 개인을 포함한 개인 공받는 개인정	l 정보가	필요하며,
3.	그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	가지 않으	며 개인정	· 범위에서 경 성보를 제공한 할 수 있습니	· 참여자	
4.	등에 의	하여 실/		및 일자	리 사업의	. 인한 수혜시 적절한 대성		
5.	있으며	만약 동	– •	경우 본	, •	공에 동의하 법 구비서류를		, ,
6.			, , , ,	_	,	·딜일자리 지 공할 것을 동		
				년	월	일	/ -	.1)
					동의자 :		( ?	<u> </u>

귀하

[서식 5]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선발자 명단통보서(사업자용)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b></b>	채용확정 인 원	명
(단위사업	장)소재지			

- ※ 채용확정 즉시 관할 고창군에 통보해야 함
- ※ 통보이후에는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취업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창군과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협약」을 체결해야 함

선	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수습예정기간)	연락처
1				
2				
3				

위와 같이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 사업 취업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표 직인

고창군수 귀하

운영 절차 명단 통보  $\rightarrow$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약정체결(청년-사업장)  $\rightarrow$  고창 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협약체결 신청(사업장-고창군) $\rightarrow$  협약체결  $\rightarrow$  근무개시 $\rightarrow$  지원금 신청  $\rightarrow$  지원금 지급

[서식 6]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약정서

이 약정서는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_\_\_\_\_(이하 "사업주"이라 함)와 청년일자리참여자 \_\_\_\_(이하 "참여자"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 근 무 장 소 :
- 3. 업무의 내용 :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5. 근무일/휴일 : 주 일/ 일
- 6. 휴가:

7. 임 금 : 월급 \_\_\_\_\_원 (지원금₩ 원, 회사지급 원)

	항 목	금 액	비고
	기본급	원	
		원	
수당		원	
Το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대 표 자 : (서명)

(참여자) 주 소:

연 락 처 :

성 명: (서명)

#### [서식 7]

## 표준 근로계약서

\_\_\_\_\_(이하 "갑"이라 함)과(와) \_\_\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근로계약기간:
- 2. 근 무 장 소 :
- 3. 업무의 내용 :
- 4. 근로시간 : \_\_시\_분부터 \_\_시\_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 6. 임 금

- 월급 : \_\_\_\_원

	항 목	금 액	비고
	기본급	원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수당		원	연장 · 휴일수당, 식대,
		원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중비 중 식중구경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주 소: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연 락 처 :

성 명: (서명)

[서식 8]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서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ㅇㅇ 인(이하 "지 원사업장"이라 한다)간에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지원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 ② "군"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장" 이 채용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의 근무기간 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3조(청년취업 연수장소) ①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점「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 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장"의 사업장 내로 한다.
  - ②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 제4조(청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장의 협력의무) "고창군"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장"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지원사업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6조(청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 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 운영실적을 "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군"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청년취업지원금 지급) ① "군"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약정서에 따라 "지원사업장"이 청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월단위로 "지원사업장"에게 지급한다.
  - ② "군"은 "지원사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 ③ "지원사업장"은 급여일에 청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에 대하여 "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사업장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지원사업장"은 고창군의「고창형 청년 뉴딜일 자리 지원사업」지침 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제재) ① "군"은 "지원사업장"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군"은 "지원사업장"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군"은 "지원사업장"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군"은 "지원사업장"이 본 약정체결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지원 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 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고창형 청년 뉴딜일 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 ⑤ "지원사업장"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군"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군"은 "지원사업장"이 약정한 근무기간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고창형 청년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 ⑦ "지원사업장"이 "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은 "지원사업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 ⑧ "지원사업장"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거나, "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 사업 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지원사업장"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②"지원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군"은 "지원사업장"의 고창형 청년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계획, 청년취업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

- ②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군"은 "지원사업장"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 "지원사업장"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고 창 군 수

(지원사업장)

대표 직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서식 9]

					출근 :	일, <b>결</b>	근 : 일,	유급휴역	<b>일</b> : 일
			월	출근	결근	확 인			
					일	= L	2 L	수습자	담 당
곤참	형처	╡ ii ⇒	とココ						
니ㅠ글 지원	형 청년 일자: 사업	4 2	き亡フ	<b>'</b>  -					
•									
23	<del></del>								
성   ㅋㅁ-1			( <del>-</del> 1	1 (a))					
	간 :	_	( 가	월)					
채용업	제 :								
월	출근	결근		· 인					
일			수습자	담 당					
임금지급	여부 지-	급일 :		지	급액 :	원	<b>※수령</b> 성명	<b>!확</b> 인 /	너명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지급액은 급여총액(세액 공제 전 금액)

#### [서식 10]

## 정규직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담당자)	(	) (	_	)
소 재 지					

###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수습자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 결 일	정 규 직 채 용 일	연 락 처		
	_						
	_						
	_						
	_						
	_						
	_						
※ 근로계약 체격인 및 정규채용익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							

위와 같이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월일대표직인

고창군수 귀하

※ 천부 1. 근로계약서 사본

#### [서식 11]

## ( )월 고창형 청년 뉴딜일지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다	표자				
		_		-					-	
사업자 등	록번호									
소 재 지					(t	! 락 처 담당자)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	좌번호		(예금주	(	-	은행 \		지점)	
근장계의 [				(에 = 구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건			. ~		<u>ال</u>	 지 원 청금액	그 ㅁ (개)	(₩		원 \
91 0 71 1	<u></u>	•	•	-1] O O		0 0 7	(* 11)	( "		
취업자 성명	경 주민·	등록번호	-	채용일 (또는 해지	[  일)	임금	지급역	) 건	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보상	역 비)		원

위와 같이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근무자에 대한 지원 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고창군수 귀하

【구비서류】1. 취업약정서 사본(협약 체결후 변경이 있는 경우)

- 2. 참여자 출근부 사본
- 3. 임금대장 사본
-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 5. 4대보험 납부(고지) 영수증

#### [서식 12]

##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탈락 인 원	명
소재지			

- ※ 참여사업장은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 요청 가능
- ※ 참여사업장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사업참여 금지
- ※ 참여사업장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고창군에 통보해야 함

## 중도 탈락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	중도탈락일	사 유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고창군수 귀하

**운영**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절차【첨부】 사직서 사본 1부. [서식 13]

##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체인력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τ	<b>권</b> 0	중도탈락 인 원	円の
소 재	지]			

구분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입사일	사직일
중 도 포기자					
대체인력					

고창군에서 시행중인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중 개인사유로 인하여 중도포기자가 발생되었으나, 위와 같이 대체인력이 충원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고창군수 귀하

## [서식 14]

## 청년취업자(교육,컨설팅,자기개발비) 지급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		전자우편 주소				
			은행명	-	은행	지점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청	년	사업장 연락처		( ) -	
취 현	업 화	지급 분야	예시)	교육비, 컨설팅비, 자기개발	3]
	J	교육비 등 자기개발비	금액 :	(기지급액 :	)
		신청금액			원

위와 같이 교육비 등	자기개발비	를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약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2. 통장사본(1회차 3. 교육 등 수료증		,	류

## [서식 15]

# 설문조사서

-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만족도 및 소감 -							
본 조사는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청년취업"이라 함)의 제도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ol> <li>고창형 청년 뉴딜일자 나를 선택("√") 또는</li> </ol>				된 경로는	<del>-</del> ? 가장	가까운	· 것 하
□ 고창군을 통하여 □ 취업지원기관을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부모, 친구, 지인 소개로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기타 ( )							
<ul> <li>2.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li> <li>□ 전공의 실무경험을 갖기 위해 □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 일시적인 경제문제 해결 □ 부모, 친구 등 권유로 □ 기타 ( )</li> </ul>							
3.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적성 및 진로설계능력테스트 □ 조직 생활과 사회 경험 □ 경제적인 도움 □ 취업 □ 기타 ( )							
4.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 ")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② 참여시업장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③ 근무기간의 적정성 (참여기간 : 개월)	( )	( )	( )	( )	( )	( )	( )

제도 개선을 위해	딜일자리 지원사업 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ዘ 필요하다고 느낀(느끼는)점, 동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b> §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청년취업참여 <b>사업장 규모</b>	□ 10명 미만 □ 10명 ~ 49명 □ 50명 ~ 99명 □ 100명 ~ 299명 □ 300명이상
(근로자수 기준)	□ 160~170만원미만 □ 170~180만원미만
○ 임금수준	□ 180~190만원미만 □ 200만원 이상
○ 성 별	□ 남자 □ 여자
○ 생 년 월 일	생 (만 세)
○ 학 력	□ 고등학교 이하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근 무 지 역 ○ 정규 <b>직 채용</b> 여-	고창군( ) 부 : □ 채용 □ 미채용

#### [서식 16]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장 만족도 조사

본 조사는 고창형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제도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sqrt{"}$ ) 또는 기재 하여 주십시오 □ 고창군 공고를 통하여 □ 취업알선기관 안내를 통하여 □ 웹 매체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기타 ( ) 2. 사업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 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수습기간을 통해 직원자격 검증 □ 구인난 해결 □ 인건비 지원 □ 기타 3. 사업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sqrt")$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매우 약간 약 간 매 우 구 분 마족 보통 불만족 마족 마족 불마족 불만족 ①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②사업참여자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③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

<ol> <li>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li> </ol>					
○ 사업장 <b>규모</b>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 ~49명 □ 50명 ~99명 □ 100명 ~299명 □ 300명 이상				
○ 사업장 <b>업종</b>	<ul><li>□ 제조업</li><li>□ 서비스업</li><li>□ 전기, 전자</li><li>□ 건설, 토목</li><li>□ 섬유, 의류</li><li>□ 기 타</li></ul>				
<ul><li>○ 사업장 소재지</li><li>○ 정규직 채용여<sup>±</sup></li></ul>	전라북도 ( )시,군 쿠 : □ 채용 □ 미채용				